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507호)
-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556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607호)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893호)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922호)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942호)
-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039호)
- 허 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111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376호)
-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034호)

2022.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상 지 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17
1.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안 제13507호, 조명희의원안)	17
2.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 추가 확대(안 제13556호 이종성의원안)	21
3.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 증원(안 제13607호 강선우의원안) ...	33
4. 급식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강화 (안 제13893호 강민국의원안, 안 제14111호 허영의원안)	41
5.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비밀전학 근거 마련 (안 제13922호 고민정의원안)	53
6.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설립근거 마련 등(안 제13942호 고민정의 원안)	60
7.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포함(안 제14039호 조오섭의원안)	74
8.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제14376호 김미애의원안)	83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 지원 강화 등(안 제15034호 이 달곤의원안)	89

I. 개요

1. 조명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50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명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11. 24.

(3) 회 부 일 : 2021. 11.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동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최근 현황과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아동정책 등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2. 이종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5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11. 26.
- (3) 회 부 일 : 2021. 11.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큰 상황임에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일부 복지지원 제공기관 운영 또는 종사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대상 시설 또는 기관에 포함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3.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60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1. 11. 30.
- (3) 회 부 일 : 2021. 12.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을 양육하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며,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양육하는 실태임.

영유아 발달 골든타임은 36개월 미만으로 그 시기에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영유아 시기의 양육이 매우 중요함. 특히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다수의 유아들은 베이비박스, 학대, 방임 등으로 들어와 유아시기에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적극 필요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제1항 후단 신설).

4.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89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12. 14.

(3) 회 부 일 : 2021. 12.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적 아동 급식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및 아동 급식 지원방식 차이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아동 급식 지원제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사항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아동 급식 단가 급식 카드 가맹점 급식 카드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의 편차가 크지만,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공급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급식제도를 운영해도 실태 비교 또는 불이익이 없어 급식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음. 현행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저소득층 급식 지원사업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서비스 이용에 대

한 수요자 중심 실태조사는 부족한 상황임.

급식 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책무를 부담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복지부가 각 지자체의 급식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신설).

5.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92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민정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1. 12. 16.
- (3) 회 부 일 : 2021.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비밀전학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 등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학교장의 경우 취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비밀전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는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 하는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

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여,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 29조제6항 신설).

6.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9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민정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1. 12. 17.
- (3) 회 부 일 : 2021. 12.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시 필요한 입지 선정 컨설팅이나 종사자 교육, 평가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운영의 한계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중앙의 아동정책 지원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시·도 단위의 종합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아동복지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자원 및 역량에 따른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에 아
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6호의2 신설
등).

7. 조오섭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03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오섭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1. 12. 22.
- (3) 회 부 일 : 2021. 1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대상자임에도 본인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4호의 2 신설).

8. 허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11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12. 27.
- (3) 회 부 일 : 2021. 12.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큼.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5조).

9.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37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1. 13.

(3) 회 부 일 : 2021. 1.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1항제5호제6호 신설).

10. 이달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0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달곤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2. 3. 31.
- (3) 회 부 일 : 2022. 4.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가 충분하지 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규정이 모호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내용을 명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자 함(안 제22조

제6항제1호의2 및 제47조제1항 각 호 · 제2항 신설).

II. 주요내용별 검토

1.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조명희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5년마다</u>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 <u>매년마다</u> ----- -----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상황과 아동이 처한 환경에 대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여야 하고¹⁾, 그동안 실태조사는 총 3차례(2008년, 2013년, 2018년) 실시되었으며, 해당 결과는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음.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개요 >

- (목적)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토대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동정책 수립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1조(실태조사)
- (조사영역)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 등 9개 영역 조사
- (조사방법) 3년 단위로 실시하며,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가구방문 조사
- (소요기간) 약 10개월('18년 실태조사 기준)
 - * 통계설계, 조사, 통계처리 및 분석 등
- (소요예산) 3.5억('18년 실태조사 기준)

1) 2021.12.21 「아동복지법」 개정(2021.12.21. 시행)으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음.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아동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보다 시의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국회는 목적이 유사한 실태조사²⁾의 주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여 아동정책을 시의성 있게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2021.12.21. 「아동복지법」을 개정(2021.12.21. 시행)하였으므로, 법률 개정의 효과를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³⁾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보완한 임시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임시조사를 활성화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유사입법례) 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복지법 제31조), 노인실태조사(노인복지법 제5조), 보육실태조사(영유아보육법 제9조) 등 3년주기 조사 규정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아동 및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인지·정서·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시의성 있는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목적이 유사한 실태조사의 주기가 모두 3년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음.

2.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 추가 확대(이종성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illegible]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 25. (생 략) <u><신 설></u> ② ~ ⑦ (생 략)	----- -----.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u>장애아동 복지지원법</u>」 제2 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 스 제공기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② ~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4) (2021. 12. 21. 개정, 2022. 6. 22. 시행예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4) 「아동복지법」 개정(2021. 12. 21. 개정, 2022. 6. 22 시행 예정)으로 제29조의3제1항에 제26호(「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가 신설됨.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학대 발생사례 증가를 계기로 아동돌봄을 수행하는 인력의 검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및 장애영유아 어린이집⁵⁾ 종사자는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에도 이들을 채용·제공하는 기관은 현재까지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었음.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가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개요 >

※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은 시설이 특정되지 않아 별도 개요 또는 현황이 없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개요

- (사업 내용)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 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기준)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 이용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전공과정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 만 20세 도래 전 학교졸업시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예견 등 전문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영유아 정기검진 결과 불인정)
- (장애 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은 소득초과시 시·군·구청장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본인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단가) 1회(50분) 기준 27,500원이 기본 단가이나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 (이용자 비용부담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소 득	총 가격	정부지원	본인부담
	(A=B+C)	바우처(B)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월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월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4만원	월 8만원

- 대상자 수 : 총 69,000명
- '22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 100,081백만원
- (제공기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1)와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군·구가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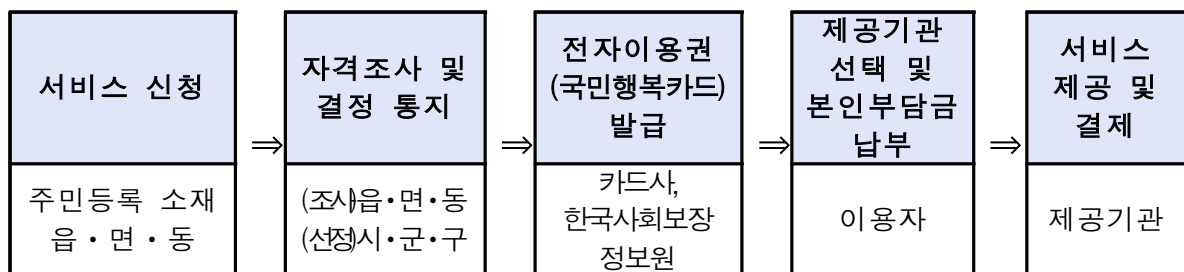
* 제공기관 수('21. 10월말 기준) : 2,326개소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제공인력 수('21. 10월말 기준) : 13,011명

○ (제공방법 및 절차)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개요

- (장애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
- (근거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19조
- (지정 및 지원) 시·군·구청장이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소요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 전문: 원장·보육교사 80%, 조리원 100%, 치료사 100%, 통합: 보육교사 80%
- (세부유형)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구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정의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정원의60% 이상)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은 시설	·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정원의 20% 이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은 시설
인건비 지원	· 원장 및 보육(특수)교사: 80% · 조리원 1명: 100% · 치료사: 100%(아동9명당 1인) · 특수교사, 치료사 등 수당 30만원	· 보육(특수)교사 - 국공립 법인 : 80% - 민간 : 169.3만원 · 특수교사 등 수당 30만원
교사배치	1:3 (교사 : 아동수, 연령 무관)	

- (아동 현황) 장애영유아의 시설유형별 이용 현황('20.12월 기준)

구분	총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일반어린이집*
아동 수 (어린이집 수)	12,229명 (2,281개소)	6,206명 (177개소)	4,959명 (1,211개소)	1,064명 (893개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고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 (장애아보육료) 1,154천원(부모 532천원, 기관 622천원, '22년 기준)

* 미취학 만12세까지 지원하며, 인건비 지원 시설은 부모보육료만, 미지원 시설은 부모+기본 보육료 지원

(단위: 천원)

구분	'21년 단가			'22년 단가		
	부모바우처	기관보육료	합계	부모바우처	기관보육료	합계
기본보육	502	587	1,089	532	622	1,154

*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범죄경력 자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취득·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 열거하는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한 입법취지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중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⁶⁾, 이를 추가할 실익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7호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이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도 이에 포함되는바, 이를 별도로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6)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함.

□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4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⁷⁾하고 있는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으로 추가될 경우 그 기관에 대한 점검·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

<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시 개정 필요 사항 >

법률 제1861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2022. 6. 22. 시행예정)	수정의견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 -----

7) 「아동복지법」(2021. 12. 21. 개정, 2022. 6. 22. 시행예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제23호·제25호·제26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20호·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8) 「아동복지법」 개정(2021. 12. 21. 개정, 2022. 6. 22. 시행 예정)으로 제29조의3제1항에 제26호(「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가 신설됨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추가시 제29조의3제1항에 제27호로 신설하고,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도 같은 호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제23호·제25호·<u>제26호</u>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 6. (생략)	----- ----- ----- ----- ----- ----- ----- -----. 1. · 2. (생략) 3. 보건복지부장관: ----- ----- -----<u>제26호·제27호</u>----- ----- 4. ~ 6. (생략)
---	---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현재 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의 경우 입법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취업제한대상 기관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에 포함되는바(「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7호), 추가 규정의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임.

3.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 증원(강선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36개월 이하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을 배치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 -----. <u>이 경우 36개월 이하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전국 아동복지시설 현황 >

(2020.12.31. 기준)

구 분		시설(개소)	인원(명)	비 고
생활시설	(계)	881	14,536	
	양육시설	249	10,406	
	보호치료시설	12	436	
	자립지원시설	15	253	
	일시보호시설	10	315	
	공동생활가정	595	3,126	
이용시설	(계)	18	-	
	아동상담소	10	-	
	전용시설	8	-	

* 자료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직접 양육을 담당하는 보육사의 경우 아동의 연령별 법정배치인원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의 경우 보육사 1명 당 2세 미만의 영아 2명을 돌봐야 함(붙임참고).
- 관련 연구에 따르면⁹⁾,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명이 돌봐야 하는 영아(만 2세 미만)는 평균 4.2명으로 나타나, 법정배치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9)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p3.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2020

- 영유아가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오는 주된 이유는 유기, 학대, 미혼출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¹⁰⁾, 영유아 시기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 등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바, 해당 아동은 비록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양육자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36개월 이하의 아동에 대해 전문인력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일대일 돌봄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개정을 통해 그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도 아동복지시설이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개정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증원, 관련 예산 증액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0)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영유아가 아동양육시설에 온 주된 이유가 베이비박스인 것으로 나타남(만0~2세 여아 82.1%, 만 3~6세 유아 72.3%)

□ 둘째,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직종(사무원, 보육사, 조리원, 영양사, 위생원 등)은 다양한데, 개정안에는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모든 아동복지시설에의 전문인력 의무배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인력과 예산 등 관련 인프라도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 배치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36개월 이하 아동의 입소를 꺼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전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

(2020.12.31. 기준)

	시설 수	계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또는 축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기타
계	881	8,475	876	236	6	190	214	204	4,966	453	15	47	216	431	197	96	248	80
아동양육시설	249	5,985	248	203	5	175	188	189	3,669	264	1	8	121	379	183	63	229	60
아동보호치료시설	12	268	12	10	1	9	11	9	102	16	14	-	12	20	6	26	11	9
자립지원시설	15	57	13	11	-	-	3	-	9	-	-	17	-	-	-	-	4	-
아동일시보호시설	10	285	10	9	-	6	11	6	165	11	-	16	7	19	8	7	-	10
공동생활가정	595	1,880	593	3	-	-	1	-	1,021	162	-	6	76	13	-	-	4	1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나, 종사자의 직종과 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음. 아울러, 아동 1명당 보육사 1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교대 근무 기준 시 아동 1명당 보육사 3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붙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법 제52조 관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시설별		직종별	아동복지시설의 장	사무국장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양육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30명 초과시 1명 추가)	필요인원	필요인원	1명	1명 (30명 초과시 1명 추가)	1명		1명 (100명초과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1명
	아동 10명 미만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30명 초과시 1명 추가)		필요인원	1명	1명 (30명 초과시 1명 추가)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아동 10명 미만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아동 보호 치료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필요 인원		1명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2명 (아동 40명 이상 4명)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1명			1명
	아동 10명 미만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공동생활가정 (아동 8명 미만)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필요 인원
자립 지원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1명					3명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2명					
	아동 10명 미만	1명									1명					
아동 상담 소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 인원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필요 인원					
	아동 10명 미만	1명									필요 인원					
아동 전용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필요 인원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필요 인원							
	아동 10명 미만	1명														

지역 아동 센터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 가. 법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 나.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사업: 상담지도원(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 다. 법 제52조제3항제5호의 사업: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 라. 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제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4. 급식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강화 (강민국의원안, 허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급식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허영의원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강민국의원안	허영의원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 ③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물가상 승률 등을 반영한 급 식최저단가를 결정하 고 제2항제3호에 따 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 ③ (현행 과 같음)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 ----- -----

한다. <u><후단 신설></u>		----.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생략) <u><신설></u>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u><신설></u>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나.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11)를 근거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으로서, 해당 아동은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시락 배달·단체급식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2022년 기준 급식지원단가는 1식에 7,000원임.

11)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 부과
- '05년 지방이양에 따라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급식단가 등 권고
-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총 302천명('21년)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급식대상자 현황(단위 : 명) >

연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19년	330,014	162,754(49.3%)	27,080(8.2%)	140,180(42.5%)
'20년	308,440	166,198(53.9%)	20,676(6.7%)	121,566(39.4%)
'21년	302,231	173,008(57.2%)	17,224(5.7%)	111,999(37.1%)

*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등

- (지원내용) '22년 기준 1식 7,000원 이상 지원 권장
- (시행주체)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 분담·지원

구 분	학 기 중				방학중, 연중
	평 일		토 · 공휴일		
	조 · 석식	중식	조 · 석식	중식*	조 · 중 · 석식
기 관명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중식은 지자체에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

** 아동이 원하는 급식지원 유형(조·중·석식)을 선택하나, 평균 1일 1~2식 제공

- (전달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전달

* 자료: 보건복지부

□ 급식지원단가와 지원대상, 급식 식단 점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사, 사회복지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시·도별 급식지원단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단가가 권장단가보다 낮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아동급식위원회 개요 >

○ (설치) 시·군·구별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설치
○ (기능)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결정,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급식단가 등 소요자원 조달 등
○ (구성)
-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 선출
- 위원은 아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① 관계 공무원(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등), ② 학부모 대표, ③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점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지명
○ (운영) 방학(여름·겨울방학 등) 기간 전 정례회의(연 2회 이상)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 (전달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전달

*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4년간 시·도별 급식지원 단가 >

시도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서울	5,000~7,000	6,000~9,000	7,000~9,000	7,000~9,000
부산	4,500~5,500	5,000~6,000	6,000~9,000	7,000~9,000
대구	5,000	5,000	5,000	7,000
인천	4,500~6,000	5,000~6,000	6,500~7,000	7,000
광주	4,500	5,000	6,000	7,000
대전	5,000	6,000	6,000	8,000
울산	4,500	5,500	6,000	7,000
세종	5,000	5,000	5,000	7,000
경기	6,000	6,000	7,000	7,000
강원	5,000	5,000	5,000~7,000	6,000~7,000
충북	4,000~5,000	4,000~6,000	5,000~6,000	6,000~7,000
충남	5,000	5,000~6,000	6,000~8,000	7,000~8,000
전북	5,000	5,000	6,000	7,000
전남	4,500	4,500	5,000~6,000	7,000
경북	4,500~5,000	4,500~5,000	5,000~6,000	7,000
경남	4,500	4,500~6,000	6,000~7,000	6,000~7,000
제주	5,000	5,000	6,000	7,000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9월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 부재,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의 편차 발생 등 아동급식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급식 지원단가의 최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¹²⁾,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급식 최저단가 기준을 준수하며, 카드사용처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관련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바 있음.

< 권익위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 권고(안) 주요내용 >

□ 추진 배경

- 결식우려 아동에게 마음 편하게 다양한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지원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중
 - 낮은 아동급식 지원단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안 마련

□ 권고(안) 주요내용

- (단가 법적근거) 국가가 전국적 최소한의 지원단가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 복지부
- (현황·실태조사 근거 등) 지원단가 준수 여부, 급식카드 운영·관리 등 지원 실태를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지자체에서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푸드코트 등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 지자체
- (가맹점정보 공공데이터 공개) 가맹점 위치,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행안부 공공정보 포털(data.go.kr)에 공개 ⇒ 지자체
- (가맹점 마크 개발) 티 나지 않게 방문하여 식사할 수 있으면서 가맹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등 문양 개발 ⇒ 복지부
- (가맹점 등록 간소화) 음식점 등 사업자가 지자체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 가맹등록 신청 가능토록 개선 ⇒ 지자체

* 자료: 보건복지부

12) 「아동복지법」 개정(2021.12.21. 개정, 2022.6.22.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함.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동은 육체적·정신적 성장기를 거치고 있어 최적의 영양공급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며, 급식지원 현황에 대한 주기적 조사·점검을 통해 급식지원 정책 등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는 급식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로서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은 표본설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므로, 아동종합실태조사와의 병행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허영의원안 제35조제3항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 급식지원의 지역간 격차 심화를 해결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 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보조금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급식지원 보조와 관련하여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지급 제외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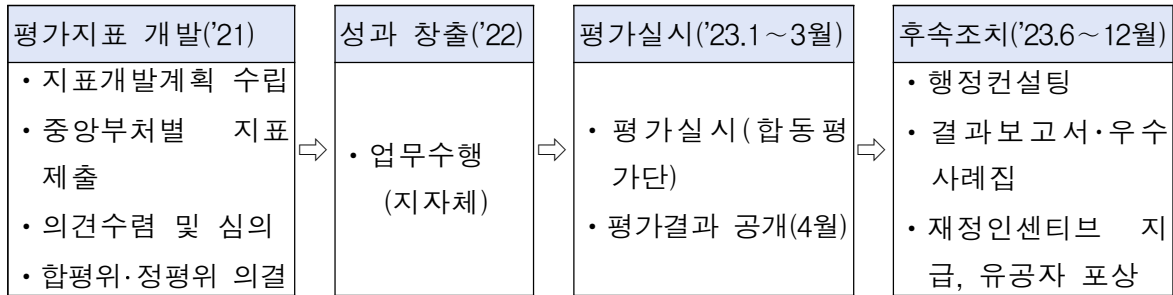
사업	
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	<u>결식아동 급식</u>
101.	<삭 제>

- 아울러, 허영의원안 제35조제6항은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아동급식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및 '23년('22년 실적) 아동급식 관련 평가지표 >

□ 합동평가 개요

-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 (목적) 국정운영의 통합성,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 부담 완화
- (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市部와 道部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체계)



□ 아동급식 관련 평가지표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지표 명	㉮ <u>아동급식 지원단가 준수율</u>				
지표 성격	<국가 주요시책> -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필요 -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외식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동급식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지표 유형	정량	공통		정순	신규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아동급식 지원단가 권고액에 대한 지자체의 준수 수준 평가			
	평가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평가목적	결식아동에게 균형잡힌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연도 급식지원단가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금액 미달 등 지자체별 지원단가 편차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적절한 급식 지원 노력 평가			
	기대효과	아동급식 지원단가 권고 준수를 통하여 아동에게 영양있는 식사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			
	기타참고사항	'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향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에 아동급식 지원단가 준수율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정부부처 의견

1) 보건복지부

- (현황 점검)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공급을 위해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급식사업 운영의 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낮음.
- (실태 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일반가구 및 저소득층가구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표본을 설계하는 것은 곤란함.
- (우수지자체 포상) 결식아동 방지 및 안전한 급식 등 아동급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해오고 있어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낮음.
- (국비 지원) 아동급식지원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은 재정당국과의 논의 선행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기획재정부

□ (현황 점검 및 실태 조사) 이견 없음.

□ (우수지자체 포상) 현재도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우수 부서·공무원 포상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신설 필요성이 낮음.

- 보건복지부는 현재 결식아동 방지 및 안전한 급식 등 아동급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 중임.
- 향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아동급식제도 운영실적 평가가 반영될 예정이므로 현행법상¹³⁾으로도 보상이 가능함.

□ (국비 지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임.

- 국가는 표준급식단가 설정·권고, 준수여부 관리 등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현재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별도의 국가지원 필요성은 높지 않음.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5.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비밀전학 근거 마련(고민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5항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u>

⑥ (생 략)	<u>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꾸준한 예방노력과 대응체계 마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이 분리되는 경우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취학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최근 6년 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42,251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38,929
최종 학대 판단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사망사건 발생건수	16	36	38	28	42	43

* 자료: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아동학대 발생장소 >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23,270	77.5
	학대행위자 가정 내	613	2.0
	소계	23,883	79.5
기타	학교	2,277	7.6
	친척집, 이웃집, 아동복지시설 등	3,885	12.9
	소계	6,162	20.5

* 자료: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아동복지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¹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한편, 초등학교의 전학절차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¹⁵⁾, 일반적인 전학절차의 예외로서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14)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15)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 ⑤ (생략)

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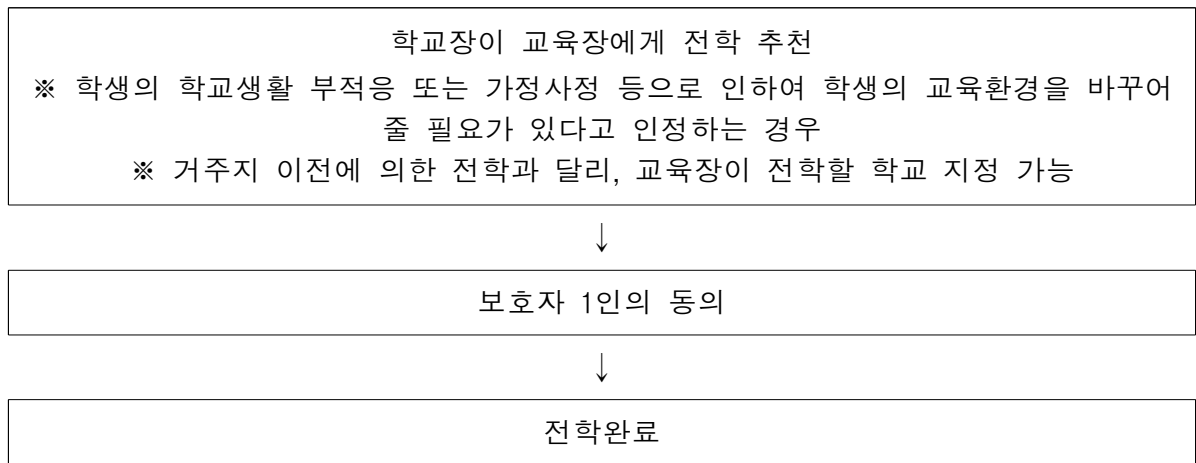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⑨ (생략)

< 전학절차의 예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



□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령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동의 전학 절차에 따르면, 아동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전학 조치 사실 및 학교·거주지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없이 비밀전학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초등학교의 장은 이와 같은 조치를 요청받더라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 전학이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 모두인 경우이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비밀전학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교육감에게 비밀전학을 직접 요청하도록 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이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학이 어려울 경우 피해아동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그 필요성이 강조되더라도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법체계적인 면에서는 취학이 곤란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식 해석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다. 정부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행위자 대다수가 피해아동의 부모임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예시를 추가하여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학대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비밀전학 제도 개선에 적극 공감함. 다만,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개정 조문에 ‘편부모 또는 양친 모두의 학대가 의심되는 때 등’과 같은 구체적 예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6.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설립근거 마련 등(고민정의위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6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략)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6의2.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u>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10조의3(시·도아동권리보장원)</u>
	<u>① 시·도지사는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u>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시·도보장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보장원은 관할 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 및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업무 조정·연계·평가 지원

2.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업무 지원

3.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4.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관련 업무 지원

5. 보장원,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복지사업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시·도지사는 시·도보장원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공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보장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보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시·도-----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25. (생략)

② ~ ⑦ (생략)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illegible]

1. -----시 · 도보장원, 지방자
치단체-----

2. ~ 2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

-;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u>12. 제10조의3에 따른 시·도보장원</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아동권리보장원 개요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¹⁶⁾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관련 위탁업무를 통·폐합하여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아동정책 관련 통합기관으로서 2019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2020년 1월에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16)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 경과 >

- ('18. 12.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19. 1. 15.) 법률안 공포,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근거 마련
- ('19. 3. 12.)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보건복지부, 관련 학계 등 9인
 - (운영) 정관, 조직, 발전방향, 예산 등 법인 설립 사항 심의·자문
- ('19. 6. 18.)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 ('19. 6. 28.) 아동권리보장원 창립(발기인) 총회
- ('19. 7. 16.)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총 4개 기관 우선 통합*)
 - ※ 중앙입양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 ('20. 1. 1.) 총 4개 기관 추가 통합*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디딤씨앗지원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20. 1. 29.) 기타 공공기관 지정

< 아동권리보장원 통합기관 현황 >

기존 아동업무 지원체계		아동권리보장원 통합기구	
[기존] 분산된 지원 체계		아동권리보장원 통합기구	
구분	통합대상기관	사업 수행 근거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6호	
아동보호 전달체계지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시행령 제56조제7항제4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8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7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아동자립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행령 제56조제7항제5호	
	디딤씨앗사업지원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행령 제56조제7항제6호	
입양인 및 가족지원	중앙입양원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9호	
실종아동보호	실종아동전문기관(중앙입양원)	실종아동법 제5조제1항	
[기존] 부처 수행 업무		사업 수행 근거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분석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평가 지원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아동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	
아동정책 영향평가 지원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 시행령 제56조제7항제2호	
아동보호서비스 기술지원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	
교육·홍보·국제협력 업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11호 시행령 제56조제7항제1호	

* 자료 : 보건복지부

다. 검토의견

1)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사업으로 규정

□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시·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양육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초등아동 돌봄시설로,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등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 개요 >

구분	내 용
목적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사업내용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식사) 제공 등
지원인력	센터장 1인(총괄 관리자), 돌봄선생님 시간제 2인(또는 전일제 1인) - 자원 연계·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필수적인 업무 담당 - 그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별 인력 배치
사업공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 - 공공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활용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재원조달	설치비와 인건비·운영비는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이용자 자부담 등 활용,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활용 - 개소당 리모델링비 50백만원, 인건비 54백만원, 운영비 월 30만원('22년 기준, 국비 서울30%, 지방50%), 기자재비 20백만원(국비 100%)

* 자료: 보건복지부

<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계획 및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설치계획	17	167	517	818	1,268
설치현황	17	173	424	694	

* 자료 : 보건복지부

-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위탁받아 수행
중으로, 입지선정 컨설팅, 종사자 교육, 평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의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내용 >

- (수행부서) 아동권리본부 지역돌봄부(현원 5명, '22.1월 현재)
- (사업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친 지자체, 센터 교육, 컨설팅 지원 및 사업평가 등 복지부 사업 수행 지원
- 지자체 신규 설치 지원
- (사업안내 교육) 지자체 공무원, 관계자 등 대상으로 사업안내 온라인·집합교육 실시(연 2회 이상)
 - *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설치·운영 우수사례 지자체 특강, 지자체 설치Q&A 등
 - (맞춤형 설치지원 컨설팅) 지자체 대상 표준 설치모델 제시, 우수시설 견학, 전문 컨설턴트* 지자체 매칭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선도시설 지자체 담당자, 건축전문가, 현장전문가 등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 (현장 맞춤형 운영컨설팅 지원) 컨설턴트(관련 전문가) 위촉을 통한 시설유형별, 영역별 맞춤형 운영컨설팅 온·오프라인 지원
 - * 지자체 신청을 통해 영역별(재무회계, 인사노무, 아동안전, 아동지원 등) 컨설팅 지원
 - (종사자용 실무안내서 개발) 센터 사업안내, 관계법령, 현장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센터 운영영역별 세부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종사자 직무능력 강화) 직급별 종사자 의무교육(필수·선택, 25시간) 지원
 - * (필수) 센터운영을 위한 기본교육(아동권리, 아동지도, 개인정보보호, 아동학대예방 등) 운영(5시간, 총32회)
 - ** (선택) 프로그램 개발, 예산·회계, 다문화교육, 장애아동교육, 부모상담기법 등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20시간, 상시)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수행 지원
- (운영현황분석) 신규센터 설치현황조사(매월), 통계조사(매반기), 센터 이용대상자 대상 만족도 조사(연1회)
 - (평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평가 진행('22년~)
 -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에 따라 3년 주기 평가 수행

□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는 고유업무와 수탁업무로 구분되는데, 수탁 업무로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 연단위 계약을 통해 인건비 및 지급 인원 등을 결정하므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이 종사자 교육과 입지 컨설팅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평가·환류 등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아울러, 최근 아동학대 사례발생 증가 등을 계기로 아동돌봄 업무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양육과 돌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설립근거 마련

- 현재, 중앙과 지방의 아동복지사업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에서 운영 중인 전담기관(자립지원전담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과 시·군·구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전반적으로 아동복지 지원체계의 공공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자체 역할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의 아동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시·도 전담기관은 자립지원전담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등 4개 분야에 그치고 있고, 이 중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일부 시·도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임.

분 야	기 능	운영 현황		
		설 치	평 균인력	예산(개소당)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호(종료)아동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종사자 교육 및 사후관리	9개 소 ¹⁷⁾ (민간위탁)	7명 (총 120명)	<국· ~~바~~ 지· ~~방~~ 비> 592백만원 (10,060백만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가정 발굴, 조사, 연계, 교육 ○위탁가정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위탁아동 자립 계획 및 사례관리	18개 소 (민간위탁)	14명 (총 227명)	<지· ~~방~~ 비> 613백만원 (11,035백만원)
돌봄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컨설팅, 모니터링 등 운영 지원 ○종사자 교육 및 실적 관리 ○시·도 방과 후 돌봄 업무 지원 ○자원발굴 및 연계	17개 소 (민간위탁)	4명 (총 57명)	<국· ~~바~~ 지· ~~방~~ 비> 203백만원 (3,448백만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그룹홈 아동 자립 및 원가족 회복 지원 ○종사자 및 아동 교육	2개 소 (민간위탁)	4명 (총 8명)	<지· ~~방~~ 비> 208백만원 (415백만원)

※ 국고보조율: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 50% 지방 80%, (돌봄지원단) 대구 65% 기타 30%

* 자료: 보건복지부

17) 2022년 상반기까지 미설치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추가로 개소될 예정임.

□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의 정책지원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시·도 단위의 종합 지원체계는 미비하여 시·군·구별 자원 및 역량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1.8.)을 통해 “시·도 단위 아동정책 지원체계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내 시·도 단위 아동정책 지원체계 마련 계획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중 발췌

□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 마련

- 중앙의 정책지원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시·도 단위의 종합 조정 지원체계는 미비
 - * 現 시도 전달체계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17개 시도), 아동자립 전담기관(17개 시도)으로 나누어 있으며, 분절적 운영(▲(공공) 드림스타트, ▲(민간) 자립, 학대 등), 및 지역 간 품질 격차 발생
- 지역단위 통합 정책지원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일부 시·도 대상 시범사업 추진 후 전체로 확산
 - * 지역아동정책 수립, 아동권리보장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



□ 개정안은 시·도 단위의 아동복지관련 사업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시·도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여와 책임을 유도할 수 있고, 아동복지 지원체계의 통합적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역간·사업간 연계·조정을 가능하게 하고¹⁸⁾,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개별 맞춤 정책 등을 발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아동 복지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10조의3제2항 각 호는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일부 업무는 기존 기관의 기능과 관계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예를 들면, 안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자립지원업무 ‘지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도에서 수행 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 등의 업무는 ‘지원’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도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¹⁹⁾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이 이들 기관을 별도로

18) 예컨대,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종료 이후 타 지역으로의 이동 등의 경우 해당지역 아동을 우선 받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입소 관리 등이 필요할 수 있음.

19)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는 2021.12.21.(2022.6.22. 시행)에 신설됨.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견처럼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면 기존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기능 구분 및 관계 정립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안 제10조의3제2항제4호는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중 하나로 ‘입양 관련 업무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현행법이 입양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²⁰⁾하고 있는데

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20)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반해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양 관련 업무 범위 및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기관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방법(직접운영·위탁운영 여부, 국가와 지방의 예산매칭비율, 인력운용방법 등)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관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라. 보건복지부 의견

-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광역 단위 총괄·조정, 교육·홍보, 지역 아동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은 시·군·구 단위 수행으로 인한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한정된 아동복지서비스의 비효율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시·도에서 수행 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 등의 업무는 ‘지원’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도 차원의 정책 개발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포함(조오섭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보호중인 보호대상아동²¹⁾은 2020년 기준으로 총 24,364명이며, 매년 약 2,500여명의 아동이 보호종료되어 자립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 현황 >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20년	24,364명	11,394명	3,047명	9,923명
2019년	23,564명	10,585명	2,645명	10,334명
2018년	25,113명	11,100명	2,872명	11,141명
2017년	27,583명	12,789명	2,811명	11,983명
2016년	29,343명	13,689명	2,758명	12,896명
2015년	30,365명	14,001명	2,636명	13,728명

* 자료: 보건복지부

<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20년	2,368명	827명	168명	1,373명
2019년	2,587명	992명	172명	1,423명
2018년	2,606명	1,065명	192명	1,349명
2017년	2,593명	1,034명	153명	1,406명
2016년	2,703명	1,042명	139명	1,522명
2015년	2,677명	980명	140명	1,557명
2014년	2,172명	1,008명	82명	1,082명

* 자료: 보건복지부(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2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²²⁾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①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②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③「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호종료아동²³⁾의 자립지원을 위해 생활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보건의료지원·자산형성지원 등 세부 분야별로 구체적인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2)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23) 보건복지부는 2021.7.13.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종료아동’ 명칭(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아동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2022년 아동 분야 사업안내 등에서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명칭을 함께 기재하고 있음.

< 자립지원 실시 현황 >

구분	지원 내용																																																																										
생활지원	○자립정착금: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대학등록금 등 지급(지방이양사업) - ‘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복지부 지침)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 1인당 최소 800만 원 이상(’23년 1,000만원 이상 지급) [2022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단위: 만원, ’22.2월 지자체 조사 기준)																																																																										
	시·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1,000	1,000	1,000	부산광역시*	700	700	700	대구광역시	800	800	800	인천광역시	800	800	8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대전광역시	800	800	800	울산광역시	500	500	500	세종특별자치시	500	500	500	경기도*	1,500	1,500	1,500	강원도	500	500	500	충청북도*	500	500	500	충청남도	500	500	500	전라북도	500	500	500	전라남도	1,000	1,000	1,000	경상북도	500	500	500	경상남도	500	500	500	제주특별자치도	500	500	500
		시·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1,000	1,000	1,000																																																																							
	부산광역시*	700	700	700																																																																							
	대구광역시	800	800	800																																																																							
	인천광역시	800	800	8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대전광역시	800	800	800																																																																							
	울산광역시	500	500	500																																																																							
	세종특별자치시	500	500	500																																																																							
	경기도*	1,500	1,500	1,500																																																																							
	강원도	500	500	500																																																																							
	충청북도*	500	500	500																																																																							
	충청남도	500	500	500																																																																							
	전라북도	500	500	500																																																																							
	전라남도	1,000	1,000	1,000																																																																							
	경상북도	500	500	500																																																																							
	경상남도	500	500	500																																																																							
제주특별자치도	500	500	500																																																																								
	* 서울 : 22년부터 2년에 걸쳐 500백만원씩 분할 지급 * 부산 : (일반) 700만원, (장애) 800만원 * 경기 : 22년부터 2년에 걸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 지급 * 충북 : 청주, 괴산 800만원 ○자립수당: 보호종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19.4월~)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9) 보호종료 2년 이내 → (’20) 보호종료 3년 이내 → (’21.8월) 보호종료 5년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호종료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19) *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근로소득 공제 확대(40만원+30%→50만원+30%)																																																																										
주거지원	○그룹홈: 2년 간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납입하여 거주 ○자립지원시설: 일정기간 숙소 및 상담·자립·생활 등을 지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19.7월~)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22년 시도별 단계적 개소) 이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통합 운영																																																																										

교육지원	○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자립지원 교육 ○ 진로지원: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자원 연계 교육비 지원 및 전국 8개 국공립 전문대학 업무 협약을 통한 대학 진학 지원 * 대학생 교육비 지원(아름다운재단), 어학교육(YBM) 등 지원 * 우선입학, 기숙사·장학금 지원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업무협약 체결('18.5월) ○ 통합지원: 직업 훈련 및 자격 취득 등 지원 * 매년 약 20명씩 선발, 주거비·의료비·자기계발비 등 800만원 지원('17~'19)								
고용지원	○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제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국민취업지원제도</td><td>상담·계획수립·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는 제도(특정계층 유형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21.3월)</td></tr> <tr> <td>국민내일배움카드</td><td>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 제도(훈련비지원 우대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21.9월)</td></tr> <tr> <td>청년도전지원사업</td><td>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 제도(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21.8월)</td></tr> </tbody> </table> ○ 보호종료아동을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의 보호종료아동 고용 장려('19)	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계획수립·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는 제도(특정계층 유형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21.3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 제도(훈련비지원 우대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21.9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 제도(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21.8월)
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계획수립·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는 제도(특정계층 유형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21.3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 제도(훈련비지원 우대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21.9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 제도(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21.8월)								
보건의료지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각종 검사 및 치료 비용 지원(본인 일부 부담) ○ 건강보험: 저소득 소년소녀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10~30% 경감 *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만 21세 미만의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세대 *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과표 1억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10~30% 경감								
자산형성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1:2 매칭으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동일 금액 지원('22년 정부매칭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 * 시설 아동 1인당 연간 평균 835천원 적립('16년)								
심리·정서지원	○ 바람개비서포터즈: 후배들을 위한 자립멘토로서 자립강의, 봉사활동, 멘토링,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자립선배모임 지원 * '11~'21년 바람개비 서포터즈 363명, '22년 신규 바람개비서포터즈 120명 모집 예정 ○ 숲속힐링교실: 퇴소예정아동 대상 숲체험 등을 통한 아동의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복지부-현대차-산림청 MOU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18년 기준 3,190명 실시('19회)								
긴급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사항'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 제공								

*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²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에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이 50.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²⁵⁾.

24)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p.75, 2016, 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5) 다만, 이는 「아동복지법」 상 자립지원 규정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로서, 자립지원 제도 존재에 대한

< 「아동복지법」의 자립지원 규정 인지 여부 >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601(49.3)	619(50.7)
아동 복지 시설	성별	남성	311(51.0)	299(49.0)
		여성	259(49.4)	265(50.6)
		계	570(50.3)	564(49.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532(50.8)	515(49.2)
		공동생활가정	28(43.7)	49(56.3)
		계	570(50.3)	564(49.7)
	자립 연차	1년차	69(39.7)	105(60.3)
		2년차	76(41.1)	109(58.9)
		3년차	100(47.4)	111(52.6)
		4년차	146(56.2)	114(43.8)
		5년차	175(59.1)	121(40.9)
		계	566(50.3)	560(49.7)
	소득 수준	수급	175(56.6)	134(43.4)
		비수급	393(47.9)	427(52.1)
		계	568(50.3)	561(49.7)
	현재 상황	재학 중	149(57.3)	111(42.7)
		취업 중	296(50.6)	289(49.4)
		진학/취업준비중	125(43.3)	164(56.7)
		계	570(50.3)	564(49.7)
가정 위탁	성별	남성	8(28.6)	20(71.4)
		여성	23(39.7)	35(60.3)
		계	31(36.0)	55(64.0)
	소득 수준	수급	13(38.2)	21(61.8)
		비수급	18(34.6)	34(65.4)
		계	31(36.0)	55(64.0)
	현재 상황	재학 중	6(33.3)	18(66.7)
		취업 중	10(38.5)	26(61.5)
		진학/취업준비중	15(35.7)	42(64.3)
		계	31(36.0)	86(64.0)

* 자료 : 보건복지부('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인지도 조사와는 별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자립정착금 수급율(98.5%) 등을 고려할 때 자립 지원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생각됨.

<2018년도 자립정착금 수급율>

(단위: 명, %)

구분	총퇴소아동수	정착금지급아동수	자립정착금 지급률
합계	2,612	2,573	98.507

* 자료 : 보건복지부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해서 우선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호종료아동에게 인지시키고, 상담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보다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사회 적응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자립정보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채널²⁶⁾을 이용하여 자립정보를 안내하고 있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6) (자립정보북) 매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립정보북을 제작하여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자립지원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사자 및 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자립정보북에는 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 정책(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과 기타 공공·민간 자립지원 서비스가 소득·주거·금융·진학·취업·의료 등으로 분류되어 소개되어 있음.

(모바일 홍보) 자립정보ON(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자립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음.

- 자립정보ON은 소득·주거·금융·진학·취업 등의 항목별로 공공 및 민간 자립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

- 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은 대상자가 해당 채널을 추가할 경우, 해당 기간 제공되는 민간 자립지원 사업(장학금 등)이나 기타 정부 자립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자립지원전담요원 개요 >

- (정의)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 별표11(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 별표11(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역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중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 기간 안정적 사회적응 지원
 - * (보호아동 자립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만15세 이상 아동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 데이터 입력 및 관리 등
 -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후관리,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자립지원 데이터 입력 및 관리 등
 - ※ 향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22년 시도별 단계적 개소)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 기존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내 '21년 자립지원전담요원 294명이 배치되어 있음.

* 자료 : 보건복지부

□ 더불어,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2021.12.21. 개정, 2022.6.22. 시행)²⁷⁾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운영 예정인²⁸⁾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자립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7)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2022년 3월 기준으로 9개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운영 중이며, 2022년 상반기까지 미설치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추가로 개소될 예정임.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자립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함.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 내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개소하여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모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따라서 향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시,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지원 제도 안내 및 상담이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관련 업무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추가(김미애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1항제5호·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② ~ ⑦ (생략)	자료 및 같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6.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아동복지법」 제15조의4²⁹⁾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의 요양급여 실시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9)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하, ‘위기아동’이라 함)을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2018년) 운영 중이고, 이에 따라 위기아동으로 분류되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및 아동학대 징후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e아동행복복지시스템 개요 >

- (목적)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발생사건에 사후대응하는 방식을 넘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 마련('18. 3월 ~)
- (근거법률) :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 (내용)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사전 예측·발굴하고, 필요서비스(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등) 제공 및 학대신고
- * (총 44종) △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28종) △유치원·학교 장기결석 등 아동 특화, 영유아 건강검진(10종) △양육수당, 보육료 미신청 등 사회보장정보원 보유(6종)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① 44종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매 차수 70만~80만명) 정보 수집
 - ② 사망자·해외출국자 제외
 - ③ 예측 변수(정보)별 가중치 적용, 점검대상(약 2만~2.5만명) 확정
 - ④ 주소지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가정 방문, 학대여부·서비스 연계 필요여부 확인 → 학대의심 신고 및 서비스 연계
- (그동안 추진실적)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총 30만 2,452명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해 각종 서비스연계 7,539명, 위기아동신고 266명 실시
 - (연계정보 현황) 총 44종 정보 활용
 - 외부정보 10종, 정보원 내부정보 6종, 사각지대발굴정보 28종
 - * 외부정보(10종) : 영유아건강미검진정보, 의료기관미진료정보, 특정코드진단정보, 정기예방미접종정보, 학교장기결석정보, 유치원장기결석정보, 학교밖청소년정보, 아동학대사례관리정보, 어린이집결석정보, 가정폭력정보
 - * 내부정보(6종) : 아동복지시설퇴소자정보, 양육수당/보육료미신청자정보, 장애인등록정보, 한부모가구등특정가구정보, 자살시도자정보, 아동수당미신청자정보
 - * 사각지대발굴정보(28종) : 단전·전기료체납·단수도·단가스정보, 자살예방관리대상자, 자살시도대상자, 화재피해자, 전·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 공공임대주택체납자,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자,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자, 기초수급탈락가구, 금융연체자 등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이용가능 정보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예방접종,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³⁰⁾를 추가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호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위기아동을 조기에 예측·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도 「아동복지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³¹⁾에 따라 어린이집 및

30) 「영유아보육법」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31)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9.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유치원 출석률이 낮은 아동과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 기록이 없는 아동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2항 관련)

3.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이 다음의 정보를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정보

가. 보건복지부장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

나. 교육부장관

1)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의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실태조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법령의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나, 이미 현행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급여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위한 정보를 향후에도 추가·보완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활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 지원 강화 등(이달곤 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 업무 내용 중 사례관리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기준을 규정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제1호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⑤ (생략)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u> 2. ~ 7. (생략) ⑦ (생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지원</u> 2. ~ 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u><신설></u>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 ----- -----. <u>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② (생 략)</u>	<u>력 관리의 적정성</u> <u>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u> <u>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	--

나. 검토의견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 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관으로,³²⁾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7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

(2021.12.31.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동보호전문기관	77	9	4	3	4	2	2	2	1	19	4	3	4	5	4	4	5	2

* 자료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22조제6항³³⁾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예방

32)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020.4.7.>
2. <삭제 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33)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⑤ (생략)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 사례관리 모델 개발, 기관운영 컨설팅, 인력 교육,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제작·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수준에 편차가 크고³⁴⁾ 사례관리가 통일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 업무 내용 중 사례관리 지원을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지원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학대받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환경·특성·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하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사례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생략)

34)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p64), 사례관리 영역(68점) 평가 중 28점이 배점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평가 결과, 최고 점수는 23.26점, 최저 점수는 7.14점이고, 14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기관은 대략 29.3%임.

지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지원’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 범위를 축소·변경할 우려가 있어 보임.

□ 현행법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인 ① 사례관리와 ②아동학대예방 업무³⁵⁾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②아동학대예방 업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완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35)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마련

- 「아동복지법」 제47조³⁶⁾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실시과정 중에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다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시설 간 차이 없이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개요 >

○ (평가대상) 6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0.12.31 이전 개소한 기관)		
○ (평가기간) 2019. 1. 1. ~ 2021. 12. 31. / 3년		
○ (추진과정)		
평가 준비(2~5월)	평가 진행(6~8월)	평가 결과(9~11월)
①업무실태 및 외부환경 분석	▶ ④설명회 및 평가 안내	▶ ⑥성과평가 결과 분석
②평가지표 보완 및 개선	⑤평가 진행	⑦평가결과 보고회
③성과평가단 조직		⑧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 후 조치사항) 우수기관 대상 포상, 미흡기관 대상 품질관리 실시		

* 자료: 보건복지부

36) 「아동복지법」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거나, 평가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평가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³⁷⁾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평가 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격상하여 규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성과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³⁸⁾으로 2020.

3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 사후관리 실적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협력사업 실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8) 「아동복지법」(2020. 4. 7. 개정, 2020. 10. 1. 시행)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020.4.7.>
2. <삭제 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10. 1. 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업무 등은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등을 위한 상담·치료·교육,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³⁹⁾,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을 평가기준 중 하나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⁴⁰⁾.

□ 보건복지부는 향후 실시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개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 안 제47조제1항은 성과평가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⁴¹⁾.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39)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40)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까지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함.

41)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거나, 평가 기준을 별도 항으로 신설하여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의 목적이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규정하고, 평가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⁴²⁾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2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603호)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사례관리 지원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통해 성과평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개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
